강화신문 2단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강화신문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3.12.28.)

1. 건설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596-1번지 일원 행복주택 40호

- **강화신문 2단지는 국민임대(60호)·영구임대(30호)·행복주택(40호) 혼합단지로 금회 모집공고는 행복주택 40호에 대한 모집공고이오니 국민임대 또는 영구임대 모집 공고는 별도의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화신문 2단지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2.28.)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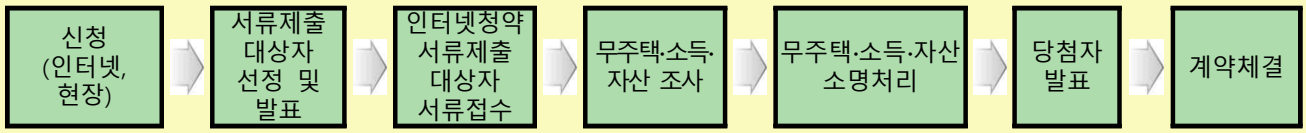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 65세 이상의 사람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오시면 현장(강화읍 주민자치센터)에서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당첨자발표 및 계약**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합니다.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모집공고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콜센터 등 **전화 상담은 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본 모집공고문을 통해 신청자격을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중복계약 불가**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중복계약은 불가합니다. 강화신문 2단지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 중 2개 이상 당첨 시 계약체결은 1개의 주택만 가능합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19.9.27.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및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공급형별	공급대상	공급호수		세대 당 계약면적(㎡)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최대 거주 기간 (년)	입주 예정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 (원)		임대 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우선 공급	일반 공급			기타 공용	주차장		계	계약금 (계약 시)	잔금 (입주 시)						
16A	대학생·청년(소득無)	-	9	16.89	9.3486	2.5557	-	28.7943	**13,940**	697	13,243	**70,860**	(+) 1,000	14,940	65,020	6	´25.07 (예정)
													(-) 11,000	2,940	102,940		
	청년(소득有)	9							**14,760**	738	14,022	**75,030**	(+) 2,000	16,760	63,360		
													(-) 12,000	2,760	110,030		
	주거급여수급자	1	1						**12,300**	615	11,685	**62,520**	(+) -	12,300	62,520	20	
													(-) 10,000	2,300	91,680		
36A	청년(소득無)	7	7	36.76	20.3467	5.5623	-	62.6690	**27,880**	1,394	26,486	**141,720**	(+) 14,000	41,880	60,050	6	
													(-) 22,000	5,880	205,880		
	청년(소득有)								**29,520**	1,476	28,044	**150,060**	(+) 15,000	44,520	62,560		
													(-) 24,000	5,520	220,060	6 ~ 10	
	신혼부부·한부모	2	2						**32,800**	1,640	31,160	**166,730**	(+) 17,000	49,800	67,560		
													(-) 26,000	6,800	242,560		
	고령자	1	1						**31,160**	1,558	29,602	**158,390**	(+) 16,000	47,160	65,050	20	
													(-) 25,000	6,160	231,300		

- 해당 주택의 구조는 철골조 모듈러 주택이며 난방은 개별난방 방식입니다.
-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물량은 해당 공급대상자의 일반 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16A형의 "대학생계층"의 일반공급 물량과 "청년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일반공급 물량 중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동일 형의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 16A 대학생·청년의 남은 주택은 16A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전환하여 공급
 - 16A 주거급여수급자의 남은 주택은 16A 대학생·청년에게 전환하여 공급
 - 36A 청년의 남은 주택은 36A 신혼부부·한부모 → 36A 고령자에게 전환하여 공급
 - 36A 신혼부부·한부모의 남은 주택은 36A 청년 → 36A 고령자에게 전환하여 공급
 - 36A 고령자의 남은 주택은 36A 청년 → 36A 신혼부부·한부모에게 전환하여 공급
- 16A형의 주택에는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가스쿡탑(2구형), 소형냉장고, 냉장고장, 키큰장, 책상, 책장)이 설치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 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 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갱신 계약 시점에 자격검증을 거쳐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갱신계약 시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36A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23.12.28.)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임대보증금 증액) 시 연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임대보증금 감액) 시 연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 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참고)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3-1. 대학생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2.28.)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①-㉮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①-㉯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1인	4,024,661원 이하	**120%**
2인	5,505,914원 이하	**110%**
3인	6,718,198원 이하	100%
4인	7,622,056원 이하	100%
5인	8,040,492원 이하	100%
6인	8,701,639원 이하	100%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661,147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8,5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①신청자 본인 ②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③신청자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동일 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단, 신청자 본인 부모의 경우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모두 포함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 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상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의 미소유를 입주자격으로 하며,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기 바람**

• **순위**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2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경기도(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이외 지역)]**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순위 → 추첨
※ 16A형의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3-2. 청년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2.28.)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①-㉮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3.12.29. ~ 2004.12.28.)**

①-㉯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 세대의(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주택공급 신청자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1인	4,024,661원 이하	**120%**
	2인	5,505,914원 이하	**110%**
	3인	6,718,198원 이하	100%
	4인	7,622,056원 이하	100%
	5인	8,040,492원 이하	100%
	6인	8,701,639원 이하	100%
세대원(본인)	1인	4,024,661원 이하	**120%**

* 7인 이상의 해당가구는 6인 해당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661,147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9,9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의 경우 동일면적 대학생계층 임대조건이 적용**

※ ①-㉯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①-㉯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①-㉯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함

※ **'청년계층'의 해당세대**는

-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①신청자 본인 ②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③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 **순위**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경기도(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이외 지역)]**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2.28.) 현재 일반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단, **우선공급 자격 미충족 시 부적격 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 처리**)

• **순위**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외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배점**

항목	3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3년 이상 거주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3년 미만 거주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자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신청 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은행명 착오기입으로 인해 납입 인정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은행을 확인하시기 바람

※ **우선공급 2순위(인천광역시 강화군 외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배점항목은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만 적용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순위 → 배점 → 추첨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16A형의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 우선공급의 경우 동일 배점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2.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①-㉮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①-㉰와 ③~⑤를 모두 갖춘 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①-㉮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

①-㉯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①-㉰ **(한부모가족)** 6세 이하(2016.12.29. 이후 출생자)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②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또는 6세 이하(2016.12.29. 이후 출생자) 자녀를 둔 자(태아포함)

③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

가구원수	일반 신혼부부		맞벌이 신혼부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2인	5,505,914원 이하	**110%**	6,506,989원 이하	**130%**
3인	6,718,198원 이하	100%	8,061,838원 이하	**120%**
4인	7,622,056원 이하	100%	9,146,467원 이하	**120%**
5인	8,040,492원 이하	100%	9,648,590원 이하	**120%**
6인	8,701,639원 이하	100%	10,441,967원 이하	**120%**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661,147원을, 맞벌이 부부는 793,376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 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 건설지역(**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 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경기도(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이외 지역)]**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2.28.) 현재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단, **우선공급 자격 미충족 시 부적격 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 처리**)

※ **순위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거주**하는 자
2순위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외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 **배점**

항목	3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3년 이상 거주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3년 미만 거주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자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신청 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은행명 착오기입으로 인해 납입인정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은행을 확인하시기 바람

※ **우선공급 2순위(인천광역시 강화군 외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배점항목은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만 적용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순위 →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일반공급	순위 →추첨

※ 우선공급의 경우 동일 배점 및 해당 지역 거주기간으로 인한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4. 고령자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2.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65세 이상인 자 (1958.12.28.이전 출생자)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1인	4,024,661원 이하	**120%**
2인	5,505,914원 이하	**110%**
3인	6,718,198원 이하	100%
4인	7,622,056원 이하	100%
5인	8,040,492원 이하	100%
6인	8,701,639원 이하	100%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661,147원을 합산하여 산정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 일 것

※ **'고령자'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2.28.)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단, **우선공급 자격 미충족 시 부적격 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 처리**)

• **순위**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거주**하는 자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외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 **배점**

항목	3점	2점	1점
① **신청자 나이**	75세 이상 (1948.12.28.이전 출생)	70세 이상 ∽ 75세 미만 (1948.12.29.~1953.12.28.출생)	70세 미만 ∽ 65세 이상 (1953.12.29.~1958.12.28.출생)
② **거주지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5년 이상 거주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5년 미만 거주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외** **인천광역시**에 거주
③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14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 **3점**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순위 →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일반공급	추첨

※ 우선공급의 경우 동일 배점 및 해당 지역 거주기간으로 인한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5. 주거급여수급자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2.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 **공고일 기준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에 한해서 신청 가능**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2.28.)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단, **우선공급 자격 미충족 시 부적격 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 처리**)

- **순위**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거주**하는 자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외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 **배점**

항목	3점	2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5년 이상 거주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5년 미만 거주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외 인천광역시**에 거주
②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장애인,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인 경우 : **3점**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순위 →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일반공급	추첨

※ 우선공급의 경우 동일 배점 및 해당 지역 거주기간으로 인한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구분	신청접수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인터넷 청약자 대상)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우선 공급	◎ 인터넷(PC·모바일)접수 '24.01.09.(화) 10:00 ~ '24.01.11.(목) 18:00 ※인터넷(PC·모바일) 청약신청은 24시간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 현장접수 '24.01.11.(목) 10:00 ~ 15:00 ※현장접수 장소 강화읍 주민자치센터 (인천 강화군 강화읍 북문길9번길 14)	'24.01.31.(수) 17:00 이후 (확인)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 등기우편접수 '24.02.01.(목) ~ '24.02.05.(월) ※ 우편접수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LH인천지역본부 주거복지서비스부 강화신문 행복 담당자 앞 * '24.02.05.(월)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 * 등기우편으로만 서류접수 받습니다.	'24.05.22.(수) 17:00 이후 (장소)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 ARS(1661-7700)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플러스 별도게시	◎ 전자계약 '24.06.11.(화) 10:00 ~ '24.06.13.(목) 18:00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 현장계약 '24.06.13.(목) 10:00 ~ 15:00 ※ 현장계약 장소 강화읍 주민자치센터 (인천 강화군 강화읍 북문길9번길 14)
일반 공급					

* 청약신청은 인터넷 PC(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명칭 : LH청약플러스)을 통한 신청이 원칙이나,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PC·모바일) 사용이 불가하신 분에 한하여 5.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현장 방문 시 현장접수를 진행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공급호수의 일정배수 이상을 선정합니다.
* **인터넷·모바일 청약신청자 중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일반우편접수 및 현장접수 불가)**
* **현장접수자 중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들의 서류접수는 신청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합니다.**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방법

ㅇ 인터넷(PC) 신청자

* **청약방법 :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건설임대**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네이버 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ㅇ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청약방법 : 모바일 앱(LH 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건설임대**
 · 앱 ("LH 청약플러스" 검색) 설치 : 아이폰 →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앱다운
*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네이버 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신 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공동인증서를 복사하여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모바일앱 사용 시 wifi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플러스 앱(App)의 '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ㅇ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지구 선택	주택형 선택	공급구분 선택	청약신청서 작성	청약신청 완료

ㅇ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시 유의사항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모바일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ㅇ 기타사항

* **인터넷(PC · 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24.01.09.(화) 10:00부터 '24.01.11.(목) 18:00까지로 시작일과 마감일을 제외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모바일) 청약의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취소 가능**)
* 신청자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청약 방법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 한함)

* **청약방법 : 신청자가 신청하려는 자격에 따라 「5. 신청서류」의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아래 장소로 방문**
*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본인이 해당하는 신청계층의 제출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현장 신청자는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므로 **현장신청자 중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제출하실 서류가 없습니다.**

일 시	**2024.01.11.(목) 10:00 ~ 15:00 (점심시간 제외 : 12:00 ~ 13:00)**
장 소	**강화읍 주민자치센터**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북문길9번길 14)
약 도	
구 비 서 류	□ **공고문 15페이지 5. 신청서류의 현장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 **공고문 15~18페이지 5. 신청서류의 공통제출서류 및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 인터넷 청약자(PC·모바일) 중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 : '24.01.31.(수) 17:00**
 서류제출 대상자 조 회 :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 등기우편으로 반드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현장접수자는 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합니다.)**
 아래의 제출방법에 따라 서류제출 마감기한까지 제출한 서류만 유효하게 접수처리되며, 서류미비, 서류미도달, 일반우편 접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등기우편 서류접수 [제출기한 : '24.02.01(목) ~ 02.05.(월), 02.05.(월) 소인분까지만 유효]**

- 등기우편 서류접수는 서류제출대상자가 공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등기우편물 발송**을 통해 담당부서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일반우편 및 현장접수로는 서류를 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기간 마감일('24.02.05.)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주소를 잘못 기재하는 등의 사유로 서류미도달, 일반우편 접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일반우편 및 현장접수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봉투 겉면에 신청하신 단지 명(강화신문 2단지 행복주택)을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발송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 LH 인천지역본부 주거복지서비스부 "강화신문 행복주택 담당자 앞" (우편번호 21655)**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3.12.28.)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현장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② 중 택일)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이 직접 발급한 (본인발급분)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기간('24.02.01.~02.05.)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현장신청('24.01.11.) 시 제출**

제출서류	비 고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3. 신청자격 및 입주자선정 방법 참고)** *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작성 제외**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공사 양식1)**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통 **(공사 양식2)**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또는 임대차계약신고필증 사본** (단, LH임대주택에 거주중인 경우에는 LH임대주택 거주에 체크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작성 제외**	1통 **(공사 양식3)**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작성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확인서에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1통 **(공사 양식4)**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 우선공급신청자의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의 초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상세증명서로 발급** •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증명서 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 주민등록표등본 내용으로 신청인과 동일등본에 기재된 타인의 관계 확인이 불가하여 계층별 "해당세대"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예 : 신청자 세대가 제3자인 세대주 등본에 동거인으로 거주중인 경우 등)	1통
임신진단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 중인 한부모가족	1통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기간('24.02.01.~02.05.)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현장신청('24.01.11.) 시 제출**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대학생계층	**대학생**	•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 5**)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졸업예정증명서	해당 대학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해당 학교
	해당자만 제출	•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청년계층	**청년** **(19세 이상~39세 이하)**	• 공통 제출서류 외 추가제출서류 없음 **※ 단, '소득이 없는 청년계층' 신청자 및 일반공급 순위를 소득근거지 기준으로 신청하는 경우 아래 청년계층의 '해당자만 제출'란 확인**	-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연금공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 • 퇴직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지방고용노동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예술활동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자만 제출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으로 신청한 사람**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소득있는 업무 종사기간이 총 5년이 경과한 자 중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가 필요한 사람** -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가 필요한 사람**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증명서(최종학력 서류로 제출) - **병역의무이행을 위해 연구기관, 기관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 제외가 필요한 경우** : 복무확인서(복무 중인 경우) 또는 병적증명서(복무완료인 경우)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 제출(미제출 시 입주불가, 당첨취소 및 계약해지 처리)**	해당 직장 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 해당 학교

신혼부부계층	**신혼부부**	• 공급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행정복지센터
	예비 신혼부부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공사양식 6**) •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공사양식 6**) 제출 •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 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동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 제출(미제출 시 입주불가, 당첨취소 및 계약해지 처리)	행정복지센터
	해당자만 제출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경우]**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 전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사본 제출(미제출 시 입주불가, 당첨취소 및 계약해지 처리)	국민연금공단 해당 직장 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
고령자		• **우선공급신청 시 장애인 등 배점(③번 항목)을 받고자 하는 경우만 추가제출**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 국가유공자 확인원 -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12.7.1전 등록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12.7.1이후 등록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14급자 :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행정복지센터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주거급여수급자		• **(필수제출)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 **우선공급신청 시 국가유공자 등 배점(②번 항목)을 받고자 하는 경우만 추가제출**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 사본 또는 지원대상자 확인원('12.7.1전 등록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12.7.1이후 등록자) - 5·18민주화유공자 또는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2024.05.22.(수) 17:00 이후]

- 착오안내 및 오류 등의 소지가 있어 **담당부서로 전화 시 당첨여부를 확인해드리지 않으니 당첨자 ARS(☎ 1661-7700) 또는 LH청약플러스에서 본인이 직접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여부 확인 방법 :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자 명단 → 당첨자명단 또는 예비자명단 → 접수번호, 이름 등으로 당첨자 또는 예비자 확인**
- 당첨 사실을 확인 하지 않아 계약체결을 하지 못한 경우 일체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중복계약은 불가합니다. 강화신문 2단지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 중 2개 이상 당첨된 경우 계약체결은 1개의 주택만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고객서비스→나의정보→개인정보변경에서 변경하시기 바라며, 정보를 변경하지 않아 SMS, 우편물 등을 수령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택의 동·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하며 변경 불가합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고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하며 자세한 내용은 20페이지 ■ 예비자(예비입주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계약체결 안내

○ 전자계약 [계약체결 기간 : 2024.06.11.(화) 10:00 ~ 2024.06.13.(목) 18:00]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전자계약이 불가하여 현장계약일('24.06.13.)에 현장계약 장소에 내방하여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계약 체결 절차】

계약금 납부	【1차 SMS】 우리공사 입금확인	【2차 SMS】 계약준비 완료안내	【PC 계약체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접속* (https://irts.molit.go.kr)	【모바일 계약체결】 "부동산 전자계약" 앱 다운로드 (Play스토어 / App스토어)
(고객)	(LH→고객)	(전자계약→고객)	로그인 (휴대폰 / 공동인증서) → 계약체결 (공동인증서) → 계약서 보관/출력 (공인전자문서센터)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됩니다.**

※ **「우리공사 입금확인」시 1차 SMS는 청약신청 시 "SMS 수신동의"한 청약자에 한하여 발송하며, 수신동의하지 않은 청약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 입금확인 및 전자계약시스템의 계약준비 완료 안내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 저장 가능**합니다.

○ 현장 계약 [계약체결 기간 : 2024.06.13.(목) 10:00~15:00]

공통 준비서류	대리 계약 시 추가서류
• 계약자 도장* 본인이 계약 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 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 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 예비자(예비입주자)

-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입주자 해약 시 예비자 순위에 따라 별도로 계약 안내하여 계약 체결하므로 실제 입주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자에 대한 임대차계약·입주안내는 SMS 및 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공사에 통보하거나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나의정보 → 개인정보변경에서 변경바랍니다.**
- **예비자가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SMS 또는 우편물을 송달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순번은 ARS 또는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 순위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고객서비스→나의정보→예비입주자순위 또는 ARS(☎1661-7700)]
- **예비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통합공공임대) 입주대기자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7.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자산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월평균 보수액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자산	일반자산	토지, 건축물 및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지방세정 자료

		주택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8. 유의사항

<table>
<tr><th>관련항목</th><th>유의사항</th></tr>
<tr><td>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td><td>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
<tr><th>입주자격</th><th>최대 거주기간</th></tr>
<tr><td>대학생, 청년 계층</td><td>6년</td></tr>
<tr><td>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td><td>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td></tr>
<tr><td>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td><td>20년</td></tr>
</table>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갱신 계약 시점에 자격검증을 거쳐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갱신계약 시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재청약 기준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대학생 등(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td></tr>
<tr><td>예비입주자</td><td>
■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

•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td></tr>
<tr><td>갱신계약 등</td><td>
■ 갱신계약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또는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계층의 경우 19세 이상 39세 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6세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td></tr>
</table>

<table>
<tr><td></td><td>
<table>
<tr><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 비율</th><th colspan="2">할증비율</th></tr>
<tr><th>최초 갱신계약 시</th><th>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th></tr>
<tr><td>10%이하</td><td>110%</td><td>120%</td></tr>
<tr><td>10%초과 30%이하</td><td>120%</td><td>130%</td></tr>
<tr><td>30%초과</td><td>130%</td><td>140%</td></tr>
</table>
•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td></tr>
<tr><td>신청자격</td><td>
•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td></tr>
<tr><td>중복입주 금지</td><td>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td></tr>
<tr><td>신청 서류</td><td>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td></tr>
<tr><td>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td><td>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td></tr>
<tr><td>자동차 등록 관련</td><td>
•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임차인 전용 리스차량 및 근무회사 차량 포함) 이외 타인소유의 차량은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 등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록법상의 세대구성을 말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

•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정 가액(2023년의 경우 3,683만원, 자동차가액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가능하며 개인별 차량가액은 조회금액과 다를 수 있음. 차량의 개별 소유지분과는 무관함)을 초과하는 차량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대학생은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의 단지 내 차량등록 불허)
</td></tr>
<tr><td>지구 및 단지특성</td><td>
■ 단지 외부여건

• 본 단지 북측 및 남측에 공영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동측에 조양방직(옛 조양방직 자리)카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에서 직선거리 500m 내로 강화도서관, 강화문화체육센터, 강화공설운동장, 신문리 다목적 회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에서 직선거리 1km 내로 강화초등학교, 합일초등학교, 강화고등학교, 덕산고등학교, 강화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위치하여 소음, 교통체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및 계약 전 주변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d></tr>
</table>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지구 내·외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단지 및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지구 토지이용계획 등의 확인을 통하여 단지 주변시설(변전소, 쓰레기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및 구조물(지하차도, 보도육교, 생태육교, 공동구환기구, 쓰레기투입구, 변압기, 버스정류장 등)계획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 주변도로 등 외부여건을 확인한 후 청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지상 4층 규모입니다.
-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설치되고,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및 모듈러로 시공됩니다.
- 본 단지의 단위세대 평면설계는 발코니 확장형을 기본으로 설계하여 임대합니다.
- 201동 1층은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사무실, 방재실, 주민공동시설(경로당 등)이 시공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도창호 및 계단창호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1층 세대 발코니 및 46A형 침실 2 창호에는 방범용 방충망이 설치됩니다.
- 경비실은 단지 주출입구에 위치하며 3 개동을 통합 관리합니다.
- 201동 옥상에 지상파수신안테나 및 무궁화위성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수신여건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층고는 2.8m로 시공오차에 의해 세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확장28대(전기차용4대 포함), 장애인3대, 일반형 60대 총 91대입니다
-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에 충전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4항 제5항 및 제16조).
- 단지 동 출입구에는 자동문과 로비폰, CCTV가 설치됩니다.
- 주차장은 전 세대가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단지배치 및 호별 위치 상 출입동선 길이 등이 균등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주차구획이 주동 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계획되어 이동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구배가 있으나 시공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세대의 경우 옥상에 동력, 무동력 흡출기가 근접해 있어 소음·냄새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층에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1동 지붕층에는 태양광발전설비 집광판이 설치되며, 태양광모듈 사양에 따라 설치 면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세대는 보안등 점등에 따라 수면장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라 시각적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전·후면에 식재되는 수목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PIT층은 소방법규에 따라 출입구가 점검구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지하저수조, 가압급수펌프, 급배기팬(펌프실) 및 아파트 PIT내 집수정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배치구조와 호수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 환경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전 세대 저층(4층)으로 구성된 단지로서 수목 식재 등에 따른 부분적인 시야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보도와 인접한 경우 사생활 노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주출입구에 자동문을 설치하고 공동 현관키를 부착하며 경비실은 단지 주출입구(1개소)에 마련되어있고 관리소에서 단지 전체를 관리하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적용됩니다.
- 무인택배함은 201동은 1층 관리사무소입구에 202동, 203동은 1층 주출입구 옆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보도·조경공간·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복도 및 엘리베이터 홀과 같은 공간은 공용부위이므로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사 시 형별, 동별, 라인별로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대는 단지 전체 법정 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설치됩니다. • 단지 내 CCTV는 36대 설치예정이며, 설치 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정압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정압시설에 관하여 인천도시가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는 임대주택 단지로 단지 내 설치되는 주민공동시설, 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 및 대지는 전체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시설물의 위치·구조·규모·색채와 지반고 등은 추후 측량결과, 지반현황 및 각종평가·심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복합커뮤니티센터, 지하층 층고, 일부 지상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상위계획(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라 목재 및 금속 담장, 생울타리 등이 설치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 담장 등은 상위계획(지구단위계획 등) 또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재질,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레벨 차이 및 단지 외부 연결 보행통로는 추후 기반시설공사 및 인허가 과정,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조물 설계 및 단지레벨, 시설물, 보행통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경사지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식재, 시설물, 포장 등 조경계획, 주변 환경, 야외시설, 저층부 외관, 동 현관, 지하 출입구, 건축 및 토목옹벽, 세부디자인 등은 각종 인·허가 또는 현장여건 및 디자인 의도에 따라 재료, 형태, 크기, 재질, 색채, 위치, 패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식재, 시설물, 포장 등 조경계획 및 색채디자인은 추후 관계기관 심의결과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체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명칭·동표시·아파트 문양·BI로고·벽체줄눈 및 외관디자인(색체, 패턴 등)은 추후 관계기관 심의결과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는 추후 관할 소방서와 협의결과에 따라 소방전용도로가 추가·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습니다. • 옥외 생활자원보관소가 설치됨에 따라 냄새,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시 위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위치변경 요청이 불가합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되며, 채광·환기창의 설치위치는 호수 및 배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천장 일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시설물 등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등)의 경우에는 호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 발코니, E/V홀 등의 바닥 단차는 시공과정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운동시설 등과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거행복지원센터(구 관리사무소), 복합커뮤니티센터, 마을쉼터, 주민운동시설 등으로 인해 일부 저층세대는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소음과 먼지 등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부여건을 확인한 후 청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평면도, 배치도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현관, 발코니 등에서 바닥 단차는 시공과정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전용면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 대용량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등)의 경우 전기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미세먼지 대응 등 환기성능 향상을 위한 전열교환기가 발코니 실외기실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 단위세대 세대통합단자함은 세대 현관에 미러형으로 설치합니다. • 세대 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벽지(도배) 공법상 초배지+정배지 봉투바름 시공 시 벽면과 도배지가 밀착되지 않습니다. • 모듈러 공법 특성 상 세대 벽체는 경량벽체 등으로 구성되어 입주 후 중량물(벽걸이TV 등)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낙하의 우려가 있어 앵커 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설비 배관과 관련하여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및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 및 발코니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가 필요합니다. •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자재는 성능향상을 위하여 색상, 재질,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 가구, 타일, 석재, 바닥재, 벽지 등의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에 적용된 자재 중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나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또는 렌지후드 배기덕트 등과 겹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이 일부 조정되거나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씽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콘센트 및 주위배관, 씽크배수관 등이 설치되며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부적합 합니다. • 주방가구 하부에는 바닥 마감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설치부위의 비노출면은 별도마감 없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욕실은 조립식 욕실로서 경량벽체로 시공하므로 중량물 설치 시 탈락, 누수의 우려가 있습니다. • 욕실 출입문은 합성수지 재질이며, 욕실 천정재는 ABS 판넬로 시공되며 천정에 점검구 시공 예정입니다. • 욕실 천정에 설치되는 욕실팬은 작동 직후에 댐퍼가 열리는 동안 운전음(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평형별로 설치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면적은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입니다. •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는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됩니다. • 1층 및 저층부 세대 발코니에는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별도배관을 설치하므로 고층부와 배관이 상이합니다. • 발코니 전기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으며, 세탁기 및 환기유닛 전원용 콘센트에 한하여 설치됩니다.

	• 각 세대에 설치되는 외부창호의 개폐 위치 및 방향은 본 공사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반사항**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 후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합니다.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의 명칭은 향후 관할관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여 질 수 있으며, 입주자모집공고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방안은 실입주 후 관리사무소와 임차인대표회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 주민공동시설에 내부 시설물(운동기구, 작업공구, 장비, 비품, 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 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방문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도배, 도장, 가구, 타일, 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입주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세대 당 대지 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내책자(팸플릿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팸플릿 제작 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 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영부분의 시설물(공영계단, 엘리베이터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의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 및 거주자의 생활환경 차이 등으로 층간, 세대 간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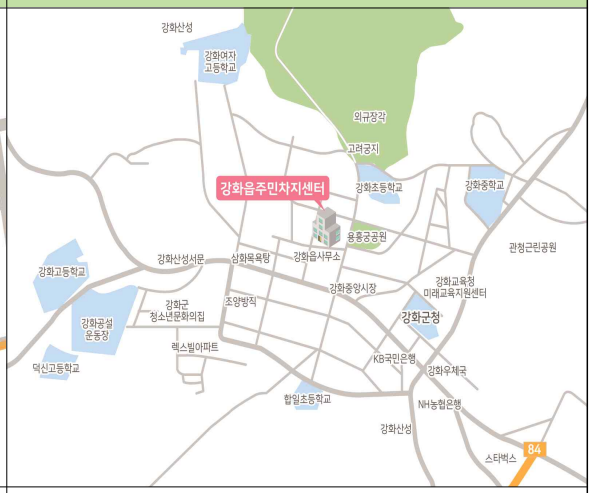
기타사항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 부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운용하고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 등을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9.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강화신문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131-82-13727) 경기북부지역본부 (420-82-00573)	지에스건설주식회사 (104-81-18121) 외 2개사	-	㈜에이프러스씨엠건축사사무소 외 2개사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주거복지서비스부

팸플렛 배부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4층 주거복지통합민원실**	
임대문의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인터넷 - 마이홈포털 (https://www.myhome.go.kr)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happyhouse2u) - LH 홈페이지 (https://www.lh.or.kr)	
당첨자 ARS	1661-7700	
인터넷 청약	· PC :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청약 → 청약신청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App) 설치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약도	**상 담**  	
	현 장 접 수 장 소  	
도로명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 LH 인천지역본부 4층 주거복지통합민원실 **■오시는길** - 지하철 : 수인선 호구포역 2번 출구 (도보 5분) - 버스 : 32번, 20번, 38번, 3-2번, 103-1번, 524번 (논현3단지하늘마을 또는 인천남동우체국 하차)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북문길9번길 14 강화읍 주민자치센터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12.28.

LH 인천지역본부